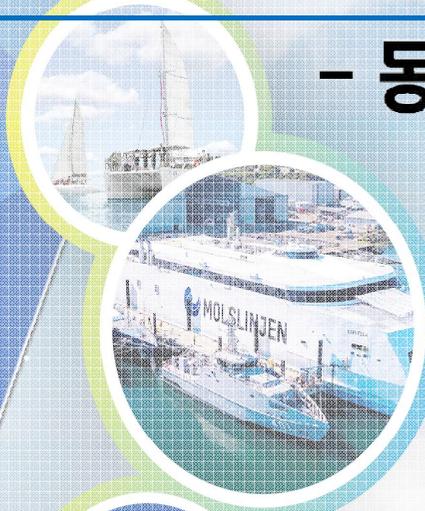


고성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구역) 결정(변경)(안)

- 동해면 소규모 조선소 앞 공유수면 -



고성군

Contents

I 계획의 개요

II 대상지 현황 분석

III 사업계획(안)

IV 군관리계획 변경(안)



1 계획의 개요

- 명 칭 : 고성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구역) 결정(변경)안
- 위 치 : 경남 고성군 동해면 공유수면 일원
- 규 모
 -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지선 공유수면
 - 용도지역 신규 지정: 2,248㎡ (미지정→계획관리지역)
 -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: 203,860㎡ (공유수면)
 -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294번지 지선 공유수면
 -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: 258,398㎡ (공유수면)

2 계획의 목적

- 공유수면 매립지 국가귀속 조치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 전망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,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·관리하고자 함.
- 동해면 일원 소규모 조선소들의 선거, 계류시설과 부유식 설비 설치 및 해상작업 등 원활한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.

● 위치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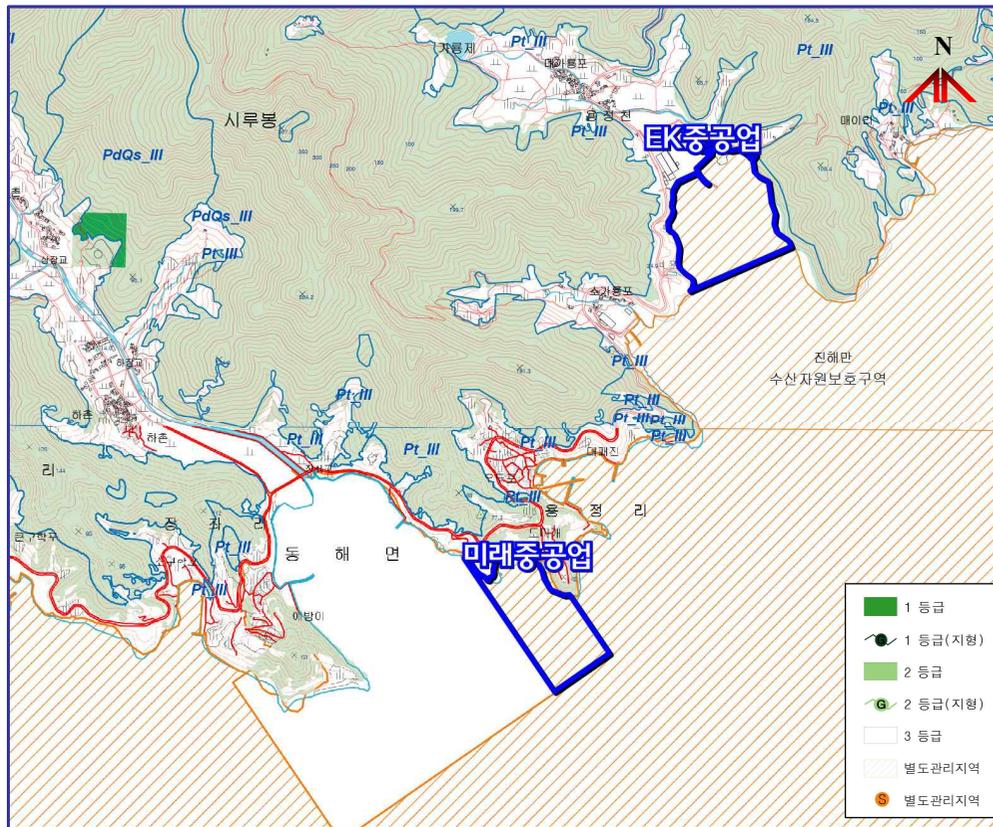
위성사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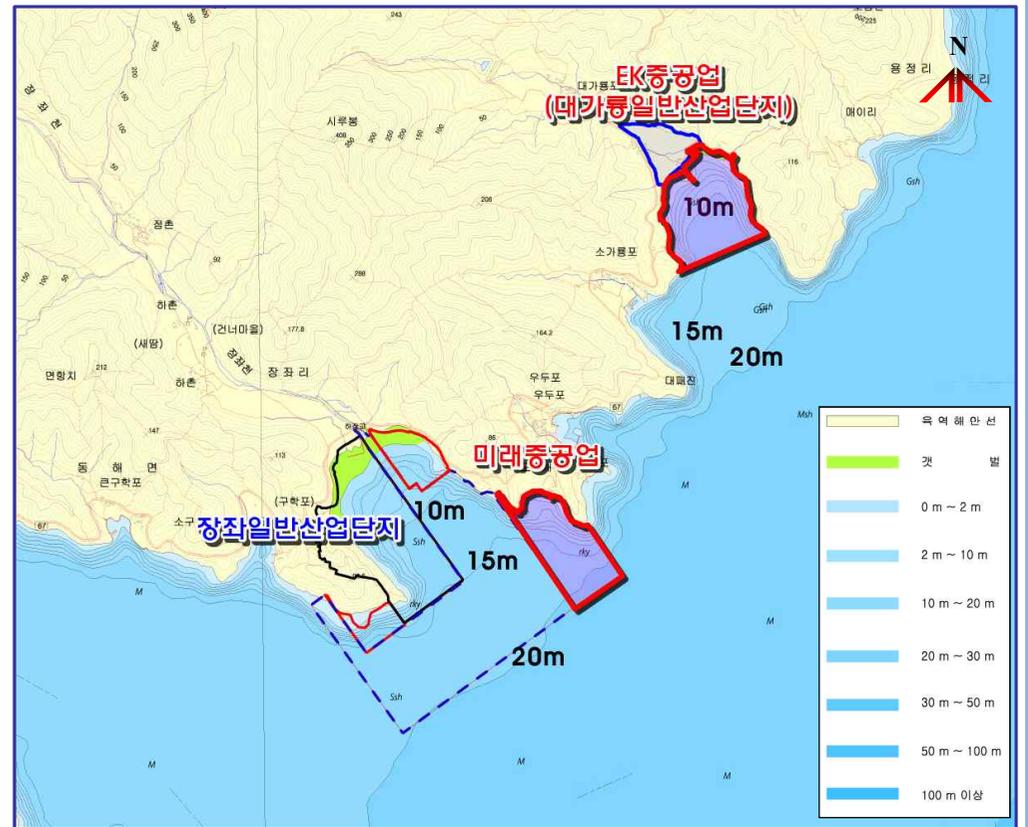
1 생태·자연도 분석

- 대상지 전면 공유수면은 생태·자연도 상 별도관리지역(수산자원 보호구역)으로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2조의 행위제한 적용
 -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6]
 - 「선박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은 가능함.



2 연안정보도 분석

- 연안정보도 상 해저지형 : 점·사용 계획 구역
 - (미래중공업) DL(-)3.0m
 - (EK중공업) DL(-)8.0m
- 갯벌 및 암반 등 보호가치가 있는 발달된 조간대 없음
 - (미래중공업) 태풍으로 소실된 후 인공해안선으로 정비
 - (EK중공업) 전면 어항의 물양장 등 인공해안선 시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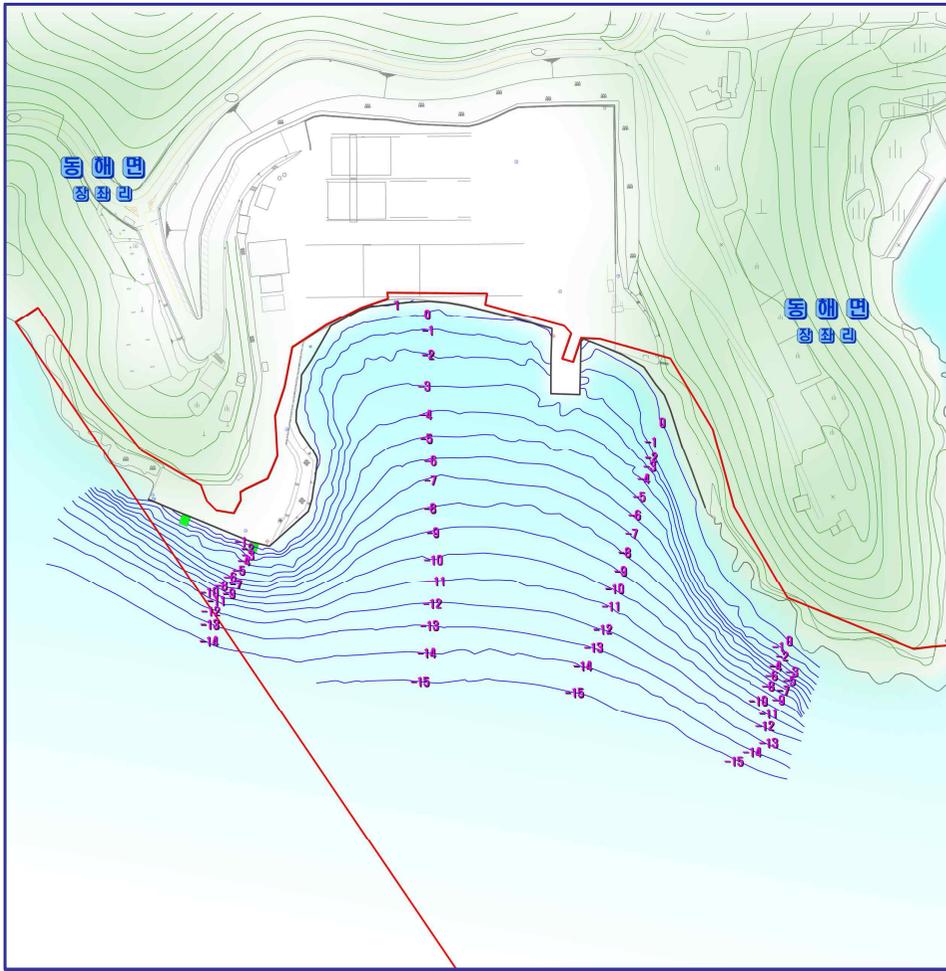




3 수심 현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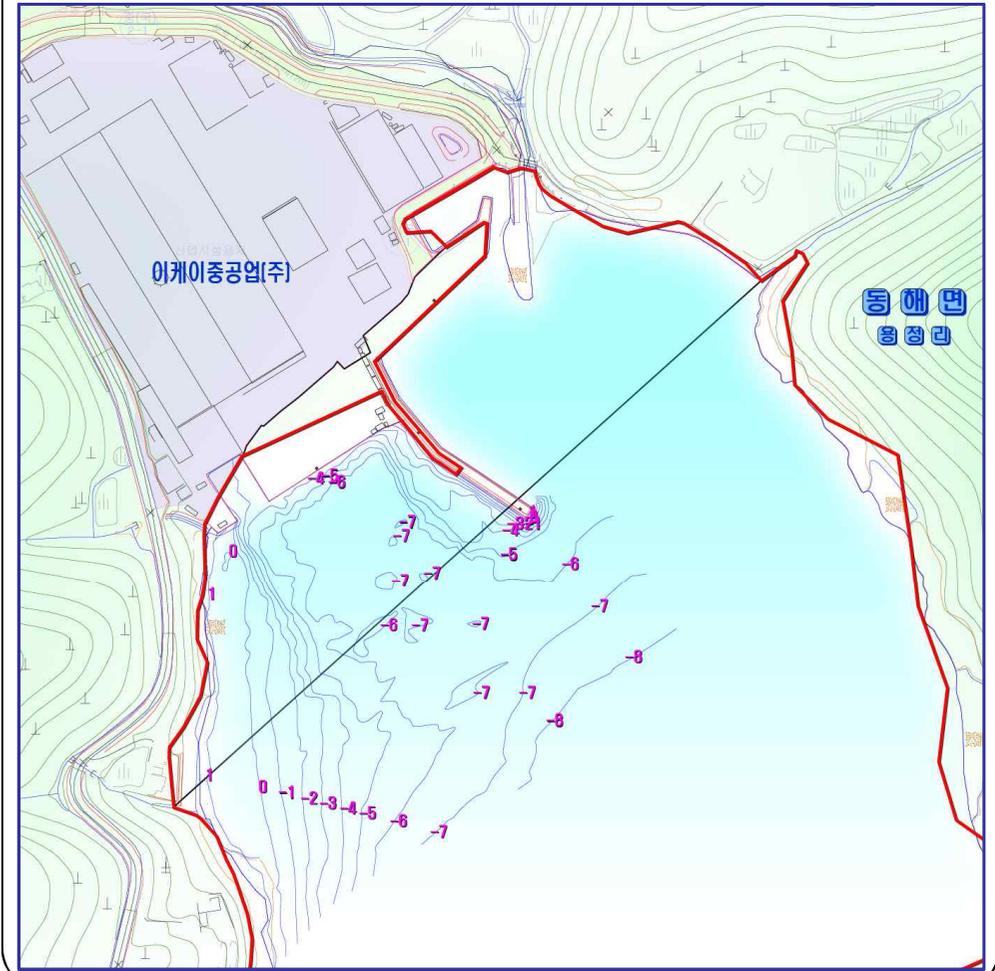
미래중공업

■ 수심측량 결과 미래중공업 앞바다의 수심 DL(-)1m~DL(-)8m



EK중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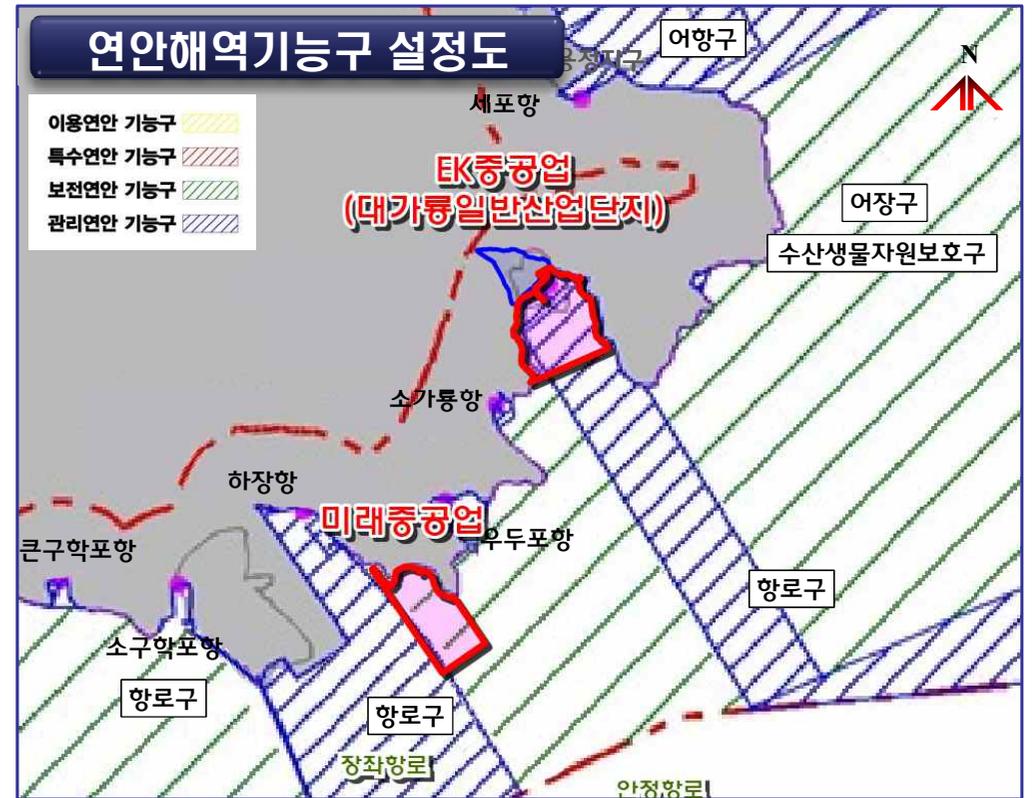
■ 수심측량 결과 EK중공업 앞바다의 수심은 DL(-)4m~DL(-)8m





4 연안관리지역계획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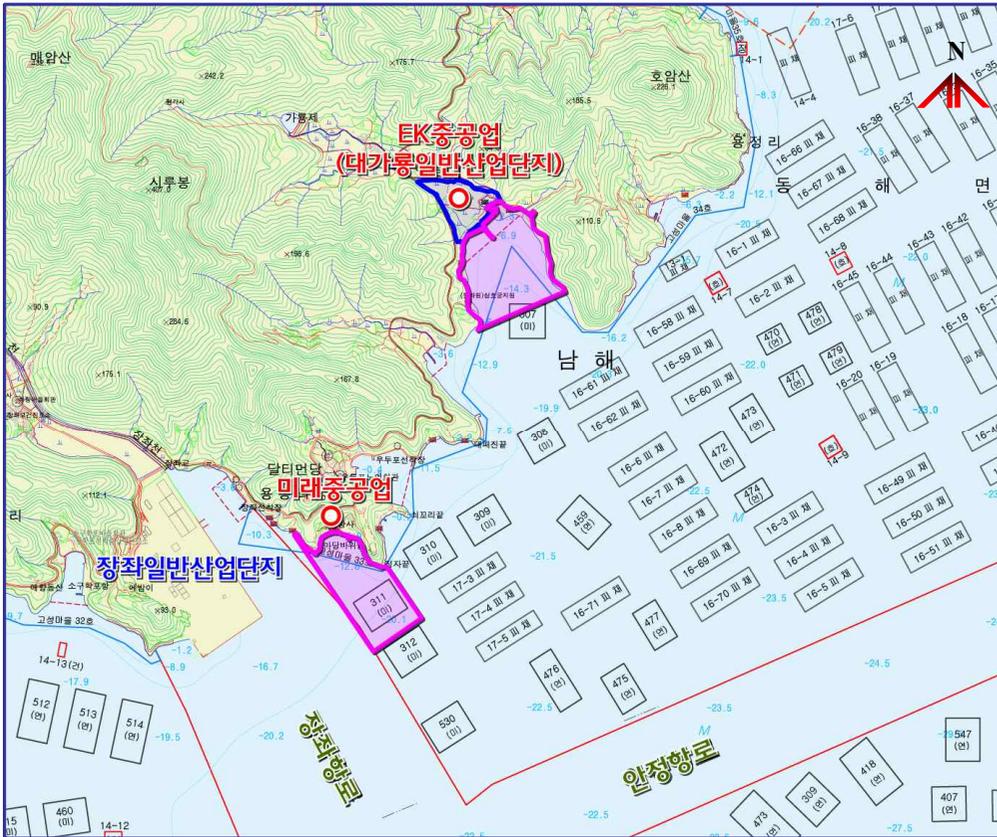
- 미래중공업 앞바다 : '보전연안해역'
 - (보전연안해역)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,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(수산생물자원보호구, 어장구)
- EK중공업(대가룡일반산업단지) 앞바다 : '관리연안해역'
 - (이용연안해역)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
 - (관리연안해역) 연안해역기능구가 혼재하여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⇨ 이용연안해역의 어항구, 항로구 + 보전연안해역의 수산생물 자원보호구, 어장구 중복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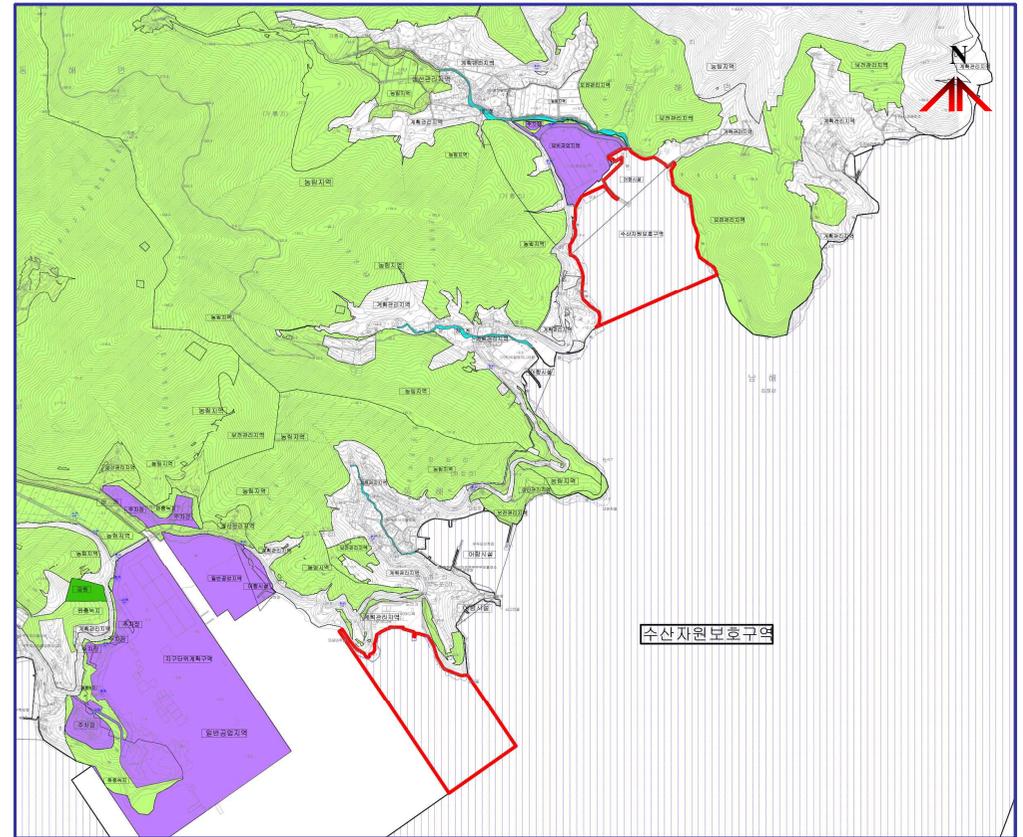
5 어업권 현황도

- 점·사용계획 구역 내 어업권 현황 : 일부 직접 보상
 - (미래중공업) 고성마을 33호
 - (EK중공업) 고성마을 34호
- 점·사용계획 구역 외 어업권 현황 : Barge, 인도선 등 이용선박의 통항 고려하여 직·간접 보상



6 군관리계획 현황

- 미래중공업
 - 공장부지 : 계획관리지역
 - 지선해면부 : 미지정지역, 수산자원보호구역
- EK중공업
 - 대가룡일반산업단지 : 일반공업지역
 - 지선해면부 : 미지정지역, 수산자원보호구역, 어항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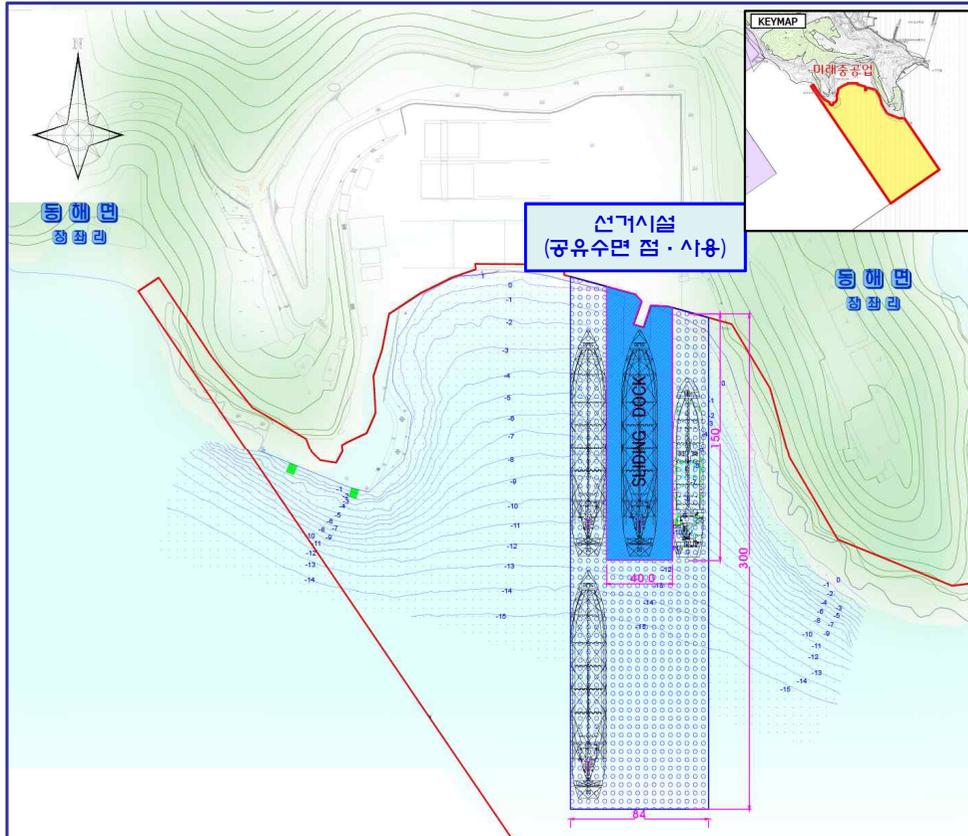




1 미래중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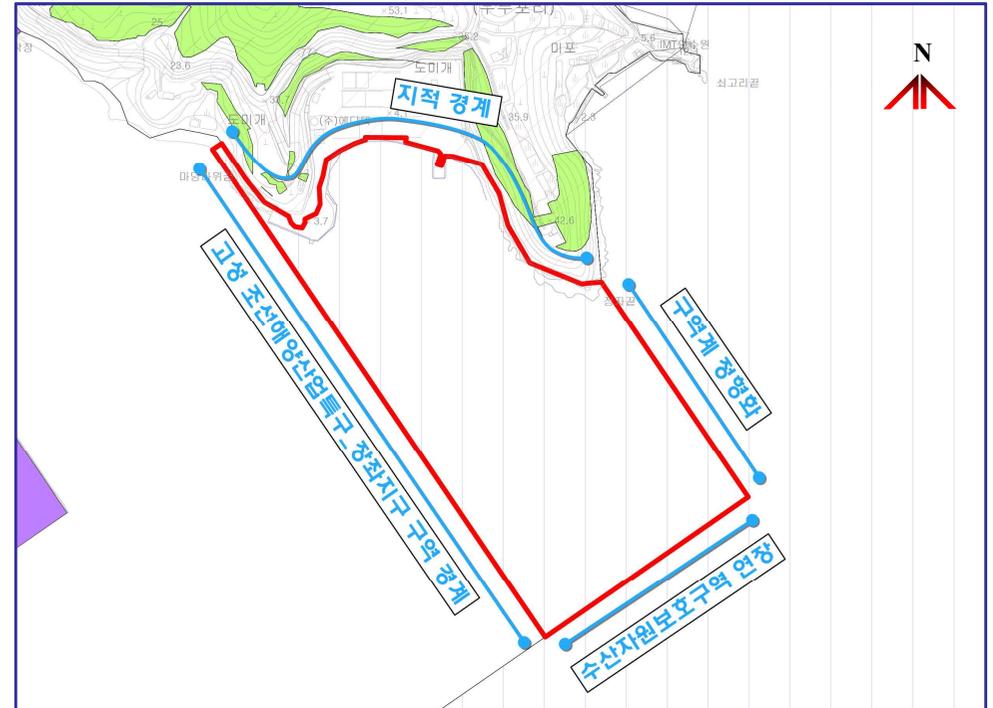
시설배치계획 예시도

- 40m 이상 선박의 건조·수리를 위해서는 선가대 또는 선거시설, 계류시설 및 접안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·사용이 필수적인 상황
 - 미래중공업 : 선가대 + 계류/접안 시설



구역계 설정(안)

방위	구역계 설정 사유
동 쪽	육역 돌출부와의 연장선 (공유수면 관리 효율성 확보)
서 쪽	「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_장좌지구」의 구역 경계 (공유수면 관리 효율성 확보)
남 쪽	「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_장좌지구」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바다쪽 끝선의 연장선
북 쪽	지적선 경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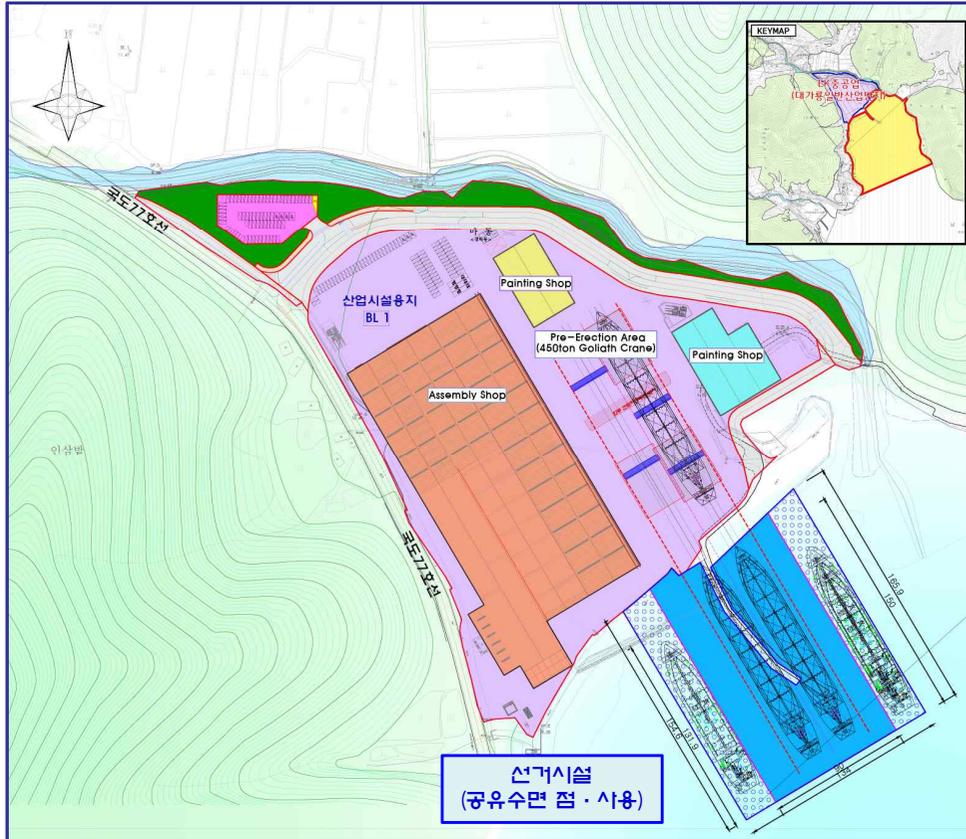




2 EK중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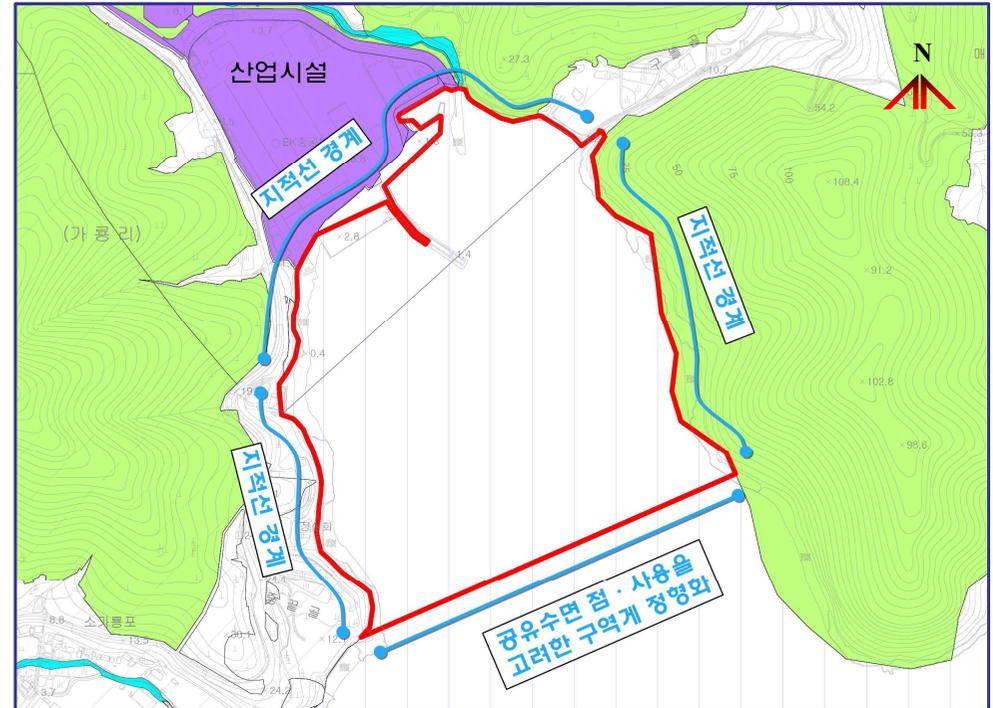
시설배치계획 예시도

- 40m 이상 선박의 건조·수리를 위해서는 선가대 또는 선거시설, 계류시설 및 접안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·사용이 필수적인 상황
- EK중공업 : 선거 + 계류/접안 시설



구역계 설정(안)

방위	구역계 설정 사유
동 쪽	지적선 경계
서 쪽	지적선 경계
남 쪽	선박 통항 시 가룡만을 벗어나 시계가 확보되기 시작하는 서쪽 지점의 연장선(해상안전 확보 및 해제 규모 최소화)
북 쪽	지적선 경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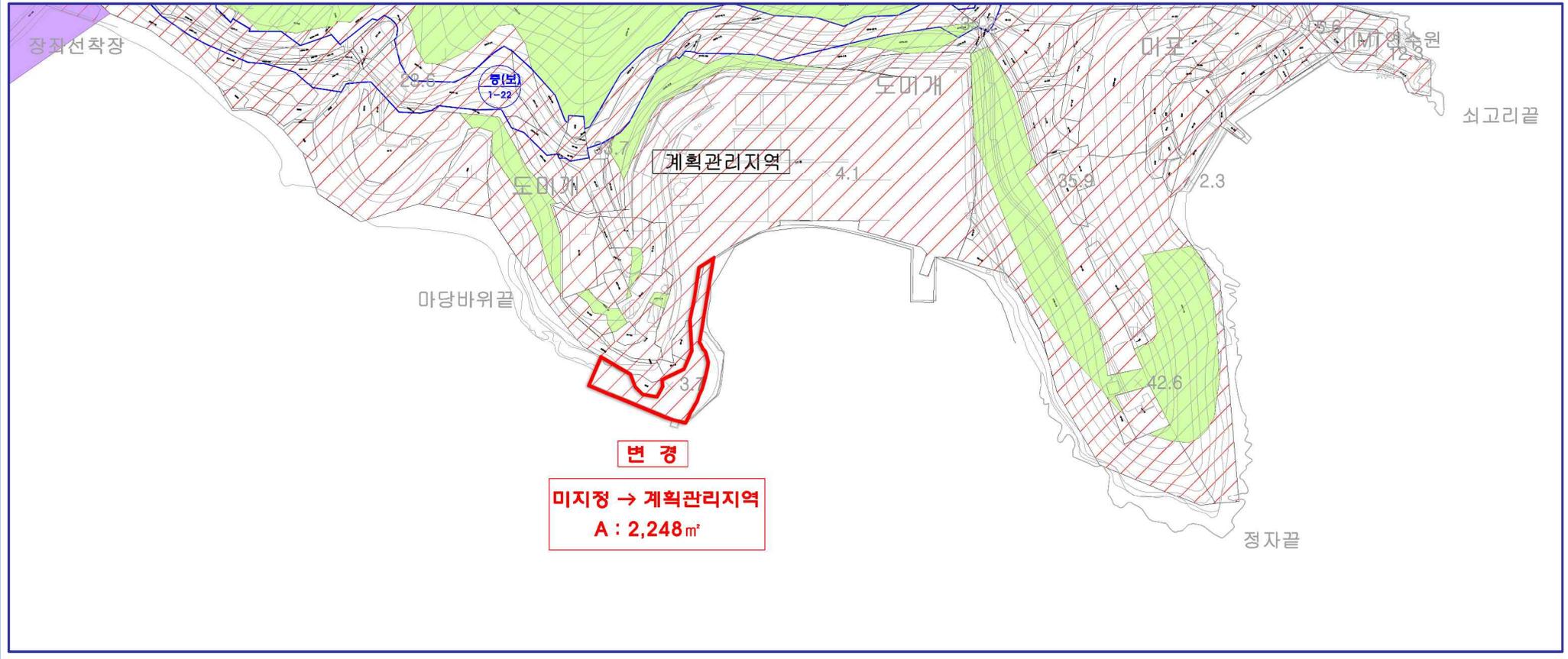




1 용도지역 지정 계획

- 매립지의 국유화에 따라 토지로 신규등록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·관리하여야 함.
-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 및 장래 토지이용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구분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 사유
		기정	변경			
-	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(가지번)	미지정	계획관리지역	2,248	100% 이하	- 매립지 국가귀속 조치에 따라 신규등록되는 토지의 장래 합리적 이용 전망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,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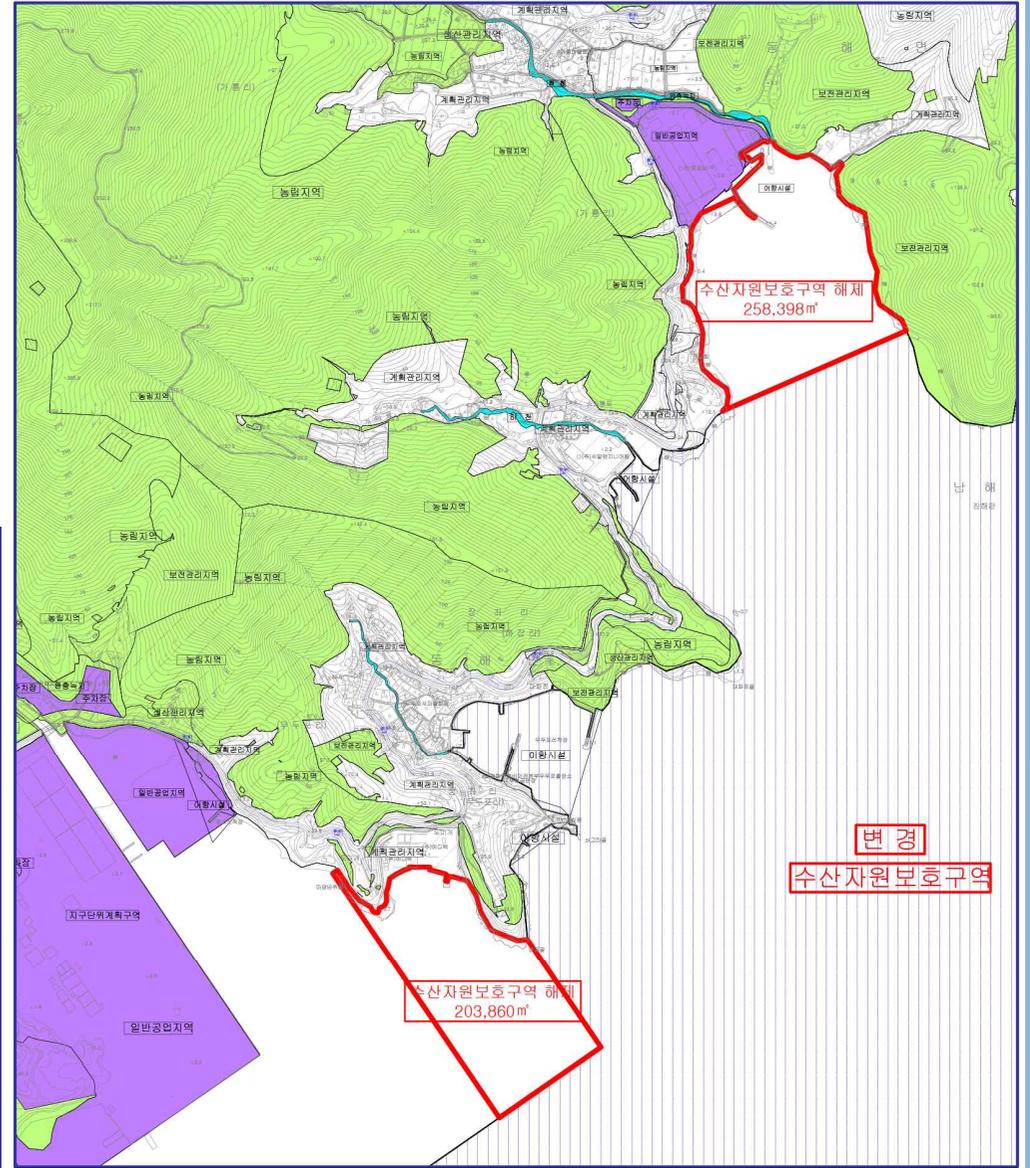


2 용도구역 변경(안)

■ 변경 사유

- 동해면 일원 중·소 조선소의 원활한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,
- 상선 위주의 조선산업에서 탈피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여객선, 관광선 등 안정적 수요 확보를 통한 고성군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경제 혁신성장에 기여하고자,
- 길이 40m 이상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역이용 규제를 해소하고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.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1	합계		165,047,006 [140,427,729]	감)462,258 [감)462,258]	164,584,748 [139,965,471]	[]안은 해면부
	한산만 구역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, 삼산면 일원	83,474,430 [69,985,000]	- [-]	83,474,430 [69,985,000]	
	남해·통영 포구역	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일원	28,203,847 [17,074,000]	- [-]	28,203,847 [17,074,000]	
	진동만 구역	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, 거류면 일원	53,368,729 [53,368,729]	감)462,258 [감)462,258]	52,906,471 [52,906,471]	



감 사 합 니 다